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1. 10.] [대통령령 제32988호, 2022. 11.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를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바나나 및 파인애플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대통령령 제3298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4"를 "별표 3 및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 중 "1,980,000톤"을 "2,100,000톤"으로 한다.

별표 3 중 2709.00란, 2711란, 2711.1란, 2711.12란 및 2711.13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0408란, 0408.1란, 0408.11란, 0408.19란, 0408.9란, 0408.91란, 0408.99란, 3502란, 3502.1란, 3502.11란 및 3502.1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1108.13, 3505 및 3505.10의 한계수량란 중 "75,788톤"을 "88,213톤"으로 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 1005.9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 <신설 2022. 11. 10.>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0	44,000톤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0	8,600톤
0804	50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망고	0	1,200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6] <신설 2022. 11. 10.>
 2023년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우리스(<i>Engraulis</i>)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Indian mackerels</i>)[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속], 삼치[스콤버로모루스(<i>Scomberomorus</i>)속],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i>			

		<p><i>nadum</i>], 병어 [팜푸스(<i>Pampus</i>)속], 쾡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캡테러스(<i>Decapterus</i>)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 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 어스(<i>Xiphias gladius</i>)], 점 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 (<i>Euthynnus affinis</i>)], 버니토 [사르다(<i>Sarda</i>)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 리대(<i>Istiophoridae</i>)].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3.91호 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 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 한다.</p>			
0303	54	<p>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i>Scomber scombrus</i>)·스콤 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p>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	20,000톤
2709	00	<p>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 로 한정한다)</p> <p>1. 석유</p> <p>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 인 것</p> <p>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p>	프로판 및 부탄 제	0	13,600,000

		0.841 초과 0.847 이하 인 것	조에 사용되는 원 유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 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 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 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 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 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 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2711	13	부탄		0	수입 전량
------	----	----	--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7] <신설 2022. 11. 10.>

2023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5	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	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			
		2. 기타		0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16,794톤
0407	1	부화용 수정란			
0407	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7	2	그 밖의 신선란			
0407	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			

		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찌른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등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